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광주광역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 적용 안내

1. 관련: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회의(2021.6.16.)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6.16.)를 통해 관할구역 내 확진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관리되고 있는 **광주광역시에** 대해 신청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1단계)을 시범적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3. 거리두기 개편안의 시범적용은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를 특정지역에 먼저 적용함으로써 수칙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행양상에 따라 새로운 방역수칙이 효과적으로 반응하는지 등을 분석·평가하여 장기간 이어질 코로나19 상황에 대비 지속가능한 거리두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으로서,
 - 중앙정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공공기관에서는 새로운 거리두기 개편안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동 개편안의 적용을 받는 각 시설에 이를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개편안 1단계**를 시범 적용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 내 확진자 발생 등 방역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편안 1단계 보다 강화된 조치**(예: 모임인원 기준 강화, 여행지 방역관리 강화, 고령층 대상 방역대책 수립 등) 내지 **단계상향* 조치를 추가로 시행하는 등 행정조치의 범위와 내용 등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단계상향 조치시 방역강화 조치는 거리두기 개편안의 단계별 조치기준에 의할 것

- 아 래 -

가. 적용기간: 2021. 6. 18.(금) 0시 ~ 7. 4.(일) 24시

나. 적용지역: **광주광역시**

다. 적용단계: **개편안 1단계**

1) 방역지침 의무화 대상시설(1, 2, 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 대상시설(35종)

- 1그룹(3종): 유흥시설(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펍게임장
- 2그룹(5종): 식당·카페, 노래(코인)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고강도 유산소 운동 중심),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 3그룹(12종):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실내체육시설(비교적 중저강도 운동), 유원시설, 오락실·멀티방, 상점·마트·백화점(300㎡ 이상), 카지노(외국인 카지노 제외), PC방
- 기타시설(13종): 스포츠경기(관람)장, 경륜장·경정장·경마장(각 국공립시설), 박물관·미술관, 실외체육시설(실외 겨울스포츠시설 포함), 숙박시설, 파티룸, 도서관, 키즈카페, 돌잔치전문점,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소·안마소, 국제회의·학술행사, 종교시설
- 고위험 사업장(2종): 콜센터, 물류센터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다중이용시설 등(1~3그룹, 기타시설, 고위험 사업장) 방역지침 의무화 지침 1부

2) 모임·행사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행사) 참여인원 30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명단 관리 등 방역지침 의무화, 자체 방역관리 계획 수립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사전 신고·협의

<협의 대상 행사(예시)>

법인·단체·공공기관·국가 등에서 개최하는 지역축제, 설명회, 공청회, 학술대회, 토론회, 국가기념일 행사, 기념식, 수련회, 사인회, 강연, 대회, 훈련 등의 모임 및 이벤트

- ※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대규모콘서트, 종교행사는 기본방역수칙상의 방역수칙 적용
- (집회·시위) 300인 이상 금지(300인 미만 집회시위 방역지침 의무화)
- (시험) 수험생 간 1.5m 이상 거리두기 유지되도록 좌석 배치, 대기자 공간 마련, 시험관계자, 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 통제
- * 기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주관 시험은 해당 시험 방역수칙 준수

붙임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3) 교통시설

- 대상시설: 대중교통시설(국제항공편 제외)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 ※ 2021.6.14.부터 적용 중인 대중교통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유지(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18531(2020.6.11.) 참조)

4) 국공립시설

- 소관부처·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히 관리하며 운영
 - ※ 소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시설별 (이용)특성, 방역관리 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 국공립시설 탄력적 운영가능
 - ※ 별도 방역수칙이 마련되어 있는 시설(카지노, 경륜·경마·경정 등)은 해당 수칙 적용

5) 사회복지시설

-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운영

6) 학교(등교)

- 기본방역수칙 준수 및 전면등교 가능
 - ※ 단계 조정 시 학교는 일주일 준비기간 부여, 단 단계 상향 시에는 신속 조정

6) 직장근무(유연근무 등 활성화)

- 시차 출퇴근제, 점심시간 시차제, 재택근무 권고

4. 자유업종 및 기타 미인가, 미등록 시설 등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등 관리가 필요한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타 업종과의 방역조치 형평성 및 위험성 등을 고려, 유사업종의 방역수칙을 참고하여 적용하는 등 적극 조치바랍니다.

5. 위와 같은 방역조치의 이행을 위해,

-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시설 또는 관할 지역 내 적용대상 시설에 방역지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또한 시설 이용자에게도 방역지침 준수 의무가 부과되어, 수칙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 제재가 뒤따를 수 있는 만큼,
 -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방역지침 등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련 단체등에

안내하며,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본부(행정안전부)는 중앙합동점검단 등을 통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부처의 이행상황 점검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3. 기본방역수칙 1부.

4.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1부. 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장

수신자 본부각과장, 중앙행정기관장, 중앙방역대책본부장, 강원도지사, 비수도권 거리두기



주무관	홍명기	행정사무관	박은경	생활방역팀장	조우경	사회전략반장	손영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총괄책임관	이기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분부장	강도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중앙사고수습본부분부장	권덕철		

협조자

시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2021. 6. 18.) 중앙사고수습본부-19181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어진동) 7층 / <http://ncov.mohw.go.kr>

전화번호 044-202-1725 팩스번호 044-202-0000 / mk7069@korea.kr / 비공개(5)